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공통	등록번호			
		제작연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연번	명칭	규격	수량	연번	명칭	규격	수량
1				6			
2				7			
3				8			
4				9			
5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이
의
의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처리절차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